

증언과 토론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재산공개와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증언과 토론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2023. 10.05 (목)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 😱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경실련 김성달)

소송 및 정보공개과정에서의 공공기관의 거짓말과 정보은폐

- 증언2 :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가로막는 비밀주의 관행

- 증언3 : 대통령실 정보비공개 문제 (참여연대 최재혁)
- 증언4 : 재정정보의 비공개 문제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 증언5 :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정보 비공개 문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2부 정보공개 제도개선 토론회 🤔

사회 :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발제

-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토론

- 한국행정연구원 윤광석
- 오픈넷 박지환

공동
주최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재정넷)

국회의원 박주민, 김용민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알권리 침해 증언 대회 및 정보공개제도개선 토론회

-
-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10:0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인사 :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경실련 김성달) p6

소송 및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공공기관의 거짓말과 정보은폐

- 증언2 :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p12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가로막는 비밀주의 관행

- 증언3 : 대통령실 정보비공개 문제 (참여연대 최재혁) p22
- 증언4 : 재정정보의 비공개 문제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p37
- 증언5 :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정보 비공개 문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p43

2부 정보공개 제도개선 토론회

사회 :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발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p53

토론

- 한국행정연구원 윤광석 p69
- 오픈넷 박지환 p74

참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p76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

증언 1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경실련 김성달

1.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사법부 판결은?

<표1>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

no	년월일	재판부	원고	판결 내용	공공기관입장
1	00.1.7	서울행정법원(4부)	중계주공 입주자	<p>[공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는 원가투명성확보 및 행정편의주의 쉬운 공공기관 폐해 근절 계기. 	(주공) 분양가 산출은 영업비밀, 민원으로 업무지장
2	00.9.8	서울고법(특별7부)	중계주공 입주자	<p>[공개] 분양원가 산출 등 영업비밀 공개로 민원 폭주로 사업 차질 예상 하나 정보공개 요구 거절 할 사유 안된다.</p>	(주공)
3	'00.12.1	서울행정법원(11부)	신림재개발 분양권자	<p>[공개] 분양가산출근거·건설원가 계산원장·공사 도급계약서·입찰내역서(정보공개 요구 거절 사유 안된다)</p>	(주공) 판결지역만 공개, 민원 제기 할 소지 많다.
4	04.2		포항환호재건축아파트 조합원	<p>[공개] 주공과 시공업체(대림산업)사이의 정산 내역 및 무상보상 평수 산출 내역(1, 2심 승소)</p>	(주공)
5	05.5.8	수원지법(행정1부)	인천삼산주공분양자	<p>[공개] 행정정보 공개거부는 위법(1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시는 구체적 사유 적시해야. 	(주공) 분양원가공개는 논쟁 대상이 될 뿐 / 공개 거부
6	05.7.1	서울행정법원(1부)	고양풍동주공분양자	<p>[공개] 토지매입보상비·택지조성비·택지조성공사비·분양자들에 판매한 세대별토지비·세대당 건축비 및 건설원가·부대비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는 투명성 확보와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형식주의·권한남용폐해 방지의 유효한 수단 	(주공) 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 항소
7	05.11.3	서울행정법원	파주출판단지조합	<p>[공개] 토지(공장용지) 조성원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 목적의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행정편의주의다 	(토공) 토지 조성원가는 영업비밀, 공개할 경우 토공이 정당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데 방해/ 대법까지간다
8	06.1.2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양풍동지구철거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공이 건설원가 공개하지 않아 원주민대책위 주장 받아들인다. 이주대책으로 택지조성 후 주택공급 할 경우 투입비용원가만 부담시켜야 함 	(주공) 건설원가 공개 않음
9	06.2.15	서울고법(특별8부)	인천삼산주공분양자	<p>[공개] 행정정보 공개거부는 위법(2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사유는 추상적이고 국민의 알권리 감안할 때 설득력 없다. 	(주공) 분양원가 검증 수단 없고 사업수익률 합의 없어 논쟁대상 될 뿐 / 공개 거부
10	06.2.27	의정부지법	양주덕정주공2단지	<p>[공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출의 기초자료인 분양원가 제공하지 않아, 분양전환절차 중지하고 제3자 분양 체결 하지 말라</p>	(주공)
11	06.5.17	대전지법 행정부	유성임대아파트	<p>[공개] 이미 종로된 건설원가 정보는 분양전환가 산출내역이므로, 임차인들이 분양계약을 결정하기위해선 분양전환 가격이 정확하게 산출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p>	(대전도시개발공사)
12	06.1.13	대법원	포항환호재건축아파트 조합원	피고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한 정보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주공)

자료 : 신문기사 및 대법원 홈페이지 검색

<표2> LH 분양원가 관련 소송진행 현황(공공임대주택)

no	관할 법원	아파트명	소송명	원고	소제 기일	소송내용	최종 판결 일	최종 판결 내용	판결이후 이행사항 (구체적기재)	
									이행 시기	이행 사항
1	대법원	양주덕정2 단지	행정정보공 개거부처분 취소	김0수	2006. 06.20	분양전환원가 산출 내역공개 청구	2007. 05.11	원고승	2007. 05.16	공개
2	대법원	동두천송 내5단지	행정정보공 개거부처분 취소	이0택	2006. 04.05	분양전환과 관련한 원가산출내역 등의 정보공개청구	2008. 2.14	공사 승	-	-
3	대법원	의정부송 산1주공	행정정보공 개거부처분 취소	이0춘	2006. 10.02	분양전환과 관련한 원가산출내역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2008. 04.10	공사 승	-	-
4	서울고 등법원	청학주공6, 7단지	행정정보공 개거부처분 취소	고0국 외 1	2006. 11.03	분양전환과 관련 분양전환가 세부내역 공개청구	2008. 04.30	원고일 부승	2008. 05.13	공개
5	서울고 등법원	양주덕정3 단지	행정정보공 개거부처분 취소	김0호 외 8명	2006. 11.29	분양전환과 관련된 원가산출내역 등의 정보공개취소청구	2008. 04.16	원고일 부승	2008. 04.25	공개
6	서울고 등법원	미릉주공2 단지	행정정보공 개거부처분 취소	미0000단지 임차인대표회 의 외 1	2006. 11.29	분양전환가격 내역 및 원가자료 공개	2008. 04.30	원고일 부승	2008. 04.25	공개
7	서울고 등법원	광명철산 도덕파크 타운2단지	행정정보공 개거부처분 취소	지0현	2006. 08.01	분양전환가격 내역 및 원가자료 공개	2008. 07.18	원고일 부승	2008. 11.21	공개
8	서울고 등법원	송산주공4 단지	행정정보공 개거부처분 취소	송0000단지 임주자대표회 의 외 1	2007. 01.08	분양전환가 세부내역 공개 청구	2008. 09.26	원고일 부승	2008. 11.17	공개
9	서울고 등법원	송산주공2 단지	행정정보공 개거부처분 취소	송0000단지 임차인대표회 의	2007. 02.12	분양전환가 세부내역 공개 청구	2008. 07.30	원고일 부승	2008. 10.01	공개
10	서울고 등법원	미릉주공3 단지	행정정보공 개거부처분 취소	미0000단지 임차인대표회 의 외 1	2007. 01.08	분양전환가격 내역 및 원가자료 공개	2008. 04.30	원고일 부승	2008. 05.28.	공개
11	서울고 등법원	명곡미래 빌5단지	행정정보공 개거부처분 취소	명00000단 지 임차인 대표회의 외 3	2007. 03.07	분양전환가격 내역 및 원가자료 공개	2008. 09.09	원고일 부승	2008. 10.09	공개
12	서울고 등법원	청주개신1 단지	행정정보공 개거부처분 취소	개0000주공 아파트 임차인대표회 의	2008. 02.16	분양전환가격 내역 및 원가자료 공개	2008. 09.03	원고일 부승	2009. 01.08	공개
13	서울고 등법원	안산고잔 그린빌18 단지	행정정보공 개거부처분 취소	정0환	2007. 03.27	분양전환가격 내역 및 원가자료 공개	2008. 09.03	원고일 부승	2008. 11.27	공개
14	서울고 등법원	송산주공7 단지	행정정보공 개거부처분 취소	송0000단지 임차인대표회 의	2007. 03.09	분양전환가격 세부내역 공개 청구	2008. 10.23	원고일 부승	2009. 02.12	공개

자료 : 심상정 의원실 국감자료

<표3> 경실련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

no	관할법원	아파트명	소송명	원고	소송내용	판결일	판결내용	판결이후 이행사항
1	서울고등 법원	SH공사 장지, 발산 아파트	행정정보 공개거부 처분 취소	경실련	분양원가 상세내역 정보공개청구	2008. 09.18	원고승	상고포기 및 자료공개
2	서울지방 행정법원	SH공사 마곡 아파트	행정정보 공개거부 처분 취소	경실련	분양원가 상세내역 정보공개청구	2020. 4.2	원고일부 승	항소취하 및 자료공개
3	서울지방 행정법원	LH공사 화성동탄, 판교, 하남미사 아파트	행정정보 공개거부 처분 취소	경실련	분양원가 상세내역 정보공개청구	2021. 6.15	원고일부 승	항소

- 입주자 및 시민단체 등의 계속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사법부는 모두 공개판결을 내렸음.
- 경실련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세내역인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LH 공사 등 공공기관은 ‘원·하도급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서는 업체의 비밀정보로, 누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음.
- 하지만 법원은 “1)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2)공사비 내역서 만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청구한 정보는 해당 건설공사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 4)나아가 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피고의 설립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사건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판시함.

2. 사법부의 판결에도 원가공개 거부하는 LH 공사 vs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SH공사와 GH공사

- 수차례의 소송에서 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자발

적인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소재지만 다를 뿐 동일한 유형의 공공아파트 원가 공개 상세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LH공사가 정보공개를 비공개처분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매번 동일한 유형의 행정소송이 제기되며 시민 불편, 사법부의 업무과다, LH공사의 소송비용으로 수많은 혈세 낭비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반면 SH공사는 경실련의 원가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자발적으로 공공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 상세내역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또한 GH공사도 홈페이지에 상세내역을 공개하였음.

3.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은?

- 경실련은 2019년 LH공사에 '화성동탄·판교·하남미사 등 공공아파트 원가상세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고, LH공사의 정보공개 비공개처분을 통지받았음.
- 이에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에 대해 LH공사는 소송과정에서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비공개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경실련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음. 1심에서 서울지방행정법원은 LH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가공개 판결을 내렸음. 이후 LH공사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LH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하였음.
- 이에 대해 경실련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음

4. 결론

- LH 공사 등 공공기관은 대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이 수차례 내려진 만큼 시민들의 분양원가 내역 공개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즉각 모든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 상세내역을 공개하기 바람. 또한, 이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비공개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임. 이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이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2019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인 지난 4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필자는 통상적인 과정을 밟을 것으로 생각했다.

보통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자료를 공개받아서 분석한다. 그리고 예산 오·남용 등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한다. 물론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고발을 하기도 한다.

대체로 이렇게 하면, 예산을 잘못 쓴 쪽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와 <뉴스타파>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국회 예산감시에서는, 20대 국회의원 32명이 예산을 잘못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2억 14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1.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저질러

- 그런데 검찰은 달랐다. 검찰은 정보공개소송과정에서도 범죄를 저질렀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소송과정에서는 무려 수천쪽 이상의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저지른 것이다.
- 특히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통지를 할 때에는 '비공개'로 통지를 했는데, 막상 소장이 접수되자 '정보부존재'로 말을 바꾼 것이었다.
- 이는 비공개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에게 있지만, '정보부존재'라고 주장하면 '정보가 존재한다'는 개연성을 원고인 국민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¹⁾. 그러니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다.

1) 대법원은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

- 구체적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의 답변서, 준비서면, 그리고 2심에서의 항소이유서를 통해서,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그렇게 주장했다. 그러다가 항소심 도중에 입장을 바꿔서 ‘일부 자료가 있다’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 그러나 지난 6월 23일 공개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가 무려 6,805쪽에 달한다. 이렇게 방대한 자료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정보부존재’를 주장하는 서면을 수차례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 이는 소송수행자였던 검사나 법무관의 잘못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다. 1심에서 소송수행자였던 검사는 나중에 ‘나도 자료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즉 본인도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허위 진술을 믿고 허위내용의 답변서와 준비서면,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것이다.

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대검찰청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중에서>

가. 특수활동비 집행정보 · 지출증빙서류 부존재.....	15
1) 특수활동비의 집행권자는 법무부 장관.....	15
가) 검찰 예산의 특수성.....	15
나) 특수활동비 집행권자 및 집행내역 작성 · 보관 의무 부존재.....	18
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 실무.....	21
2) 설령 법무부 장관의 예산 재배정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그 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금행위로 집행 완료.....	22
나. 법령상 집행 관련 증빙의 작성 · 보관 의무 없음.....	23

<대검찰청 항소이유서 중에서>

5) 소결론

○ 이상의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1은 원고의 청구 내용 중 특수활동비에 관한 정보를 법령상 작성 · 보관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 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원심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음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부당합니다.

- 이처럼 명백하게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정보가 존재하는 데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정보부존재'를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재판부까지 속이려고 했던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 다만, 죄를 물을 주체는 공판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이 아니라,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존재'를 주장하도록 한 배후에 있는 인물이다. 여기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정보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을 하기 시작할 시점의 검찰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매월 검찰총장이 직접 특수활동비 집행서류에 서명을 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도 정보가 없다고 허위주장을 했다면, 이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행위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인지했을 가능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허위공문서 작성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을 수 있는 것이다.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서 : 윤석열 전 총장의 서명이 들어있다>

검찰총장 9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2019. 10. 1. 검찰총장 비서실

□ 9월중 집행금액 : 29건 273,980,000원

검찰총장



2. 법원 판결문을 무시한 정보은폐

1) 업무추진비 카드 정보 은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했다. 확정된 법원 판결까지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행태이다.

또한 60%에 해당하는 카드전표가 흐리게 복사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원본대조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이것 역시 정보 은폐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2) 대검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 은폐

<纽스타파>가 입수한 2017년 9월 5일자 검찰 내부 공문을 보면, 일선 검찰청 뿐만 아니라 대검 각 부서도 수신처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공문의 내용에도 '기관장.부서장'이라는 식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일선 검찰청장 뿐만 아니라 대검 각 부서장들도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나와 있었다.

이 말은 일선 검찰청 뿐만 아니라 대검 각 부서도 각자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현금수령증 등의 증빙을 남기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지난 8월 13일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검 각 부서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었다.

만약 답변이 '정보부존재'가 아니라 '비공개'로 온다면, 자료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었다. 즉, 답변이 '비공개'로 온다면, 대검찰청이 6월 23일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대검 각 부서에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은폐한 셈이다.

그런데 9월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즉 자료가 있는데,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대검 각 부서에 특수활동비 자료가 있는데, 이를 은폐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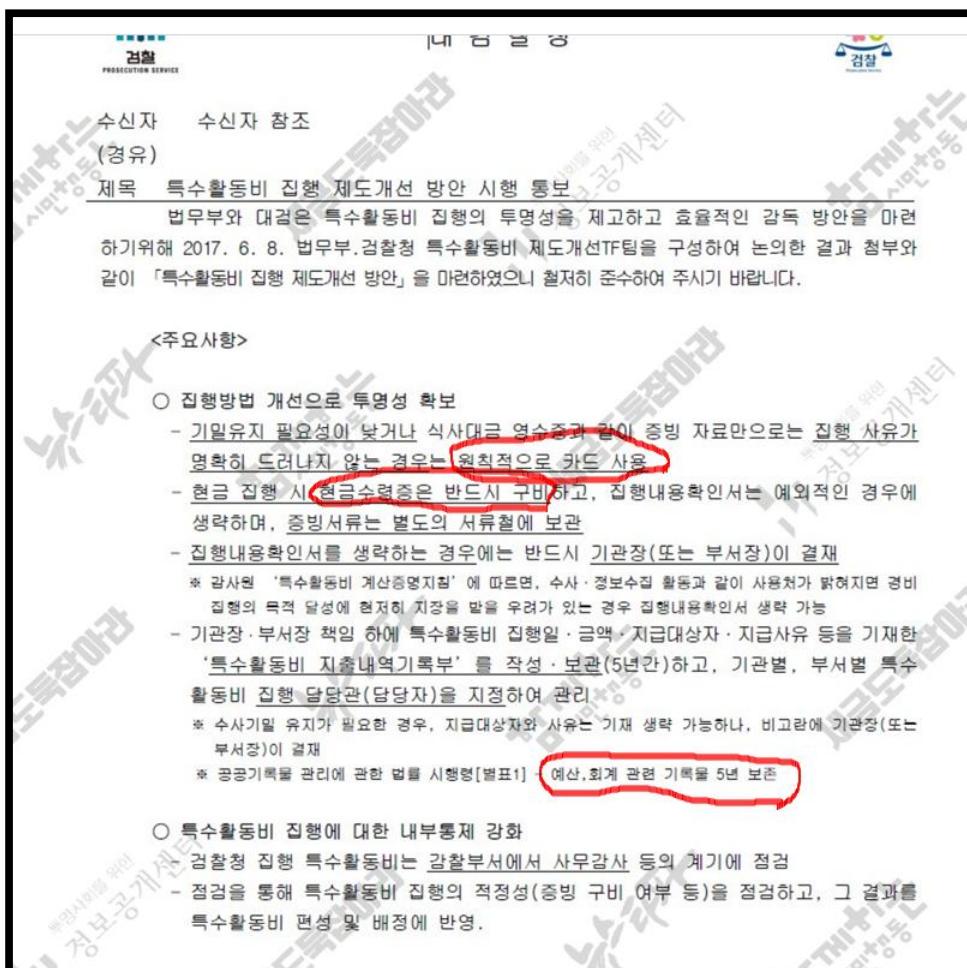
물론 '비공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문은 대검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하되, 일부 정보만 가리고 공개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검찰청이 대검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의 존재를 은폐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원 판결문을 위반하고 정보를 은폐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정보공개 역사상 이렇게 법원 판결문까지 위반하면서 정보를 은폐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검찰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지금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법원 판결문을 위반한 것이므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9월 5일자 검찰 내부 공문>



3)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중 상당수가 불법폐기된 것이다. 필자가 1998년부터 정보공개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다.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조직에서 벌어진 이런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감찰하고 시정하고 수사하게 해야 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범죄를 비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오락 가락하는 해명을 늘어놓고 있다.

자료 불법폐기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사위에 나와 "(2017년 9월 이전에는)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는 게 오히려 원칙"이었다고 발언했다. 언론들은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내부 문건을 보면, 오히려 검찰도 예산회계서류의 보존연한이 5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만 있고, '2개월에 1번 폐기'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명백한 자료 불법폐기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그 후 한동훈 장관은 말을 바꿔서, 8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지침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침'과 '교육자료'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방침이다. 물론 이런 지침이 있었다고 해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지침이어서 불법지침이다. 법률에 따르면, 예산회계자료는 5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고 그 후에 폐기하려고 해도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불법폐기이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렇다고 해도 공식적인 지침이 있었다는 것과 그냥 교육자료에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이다. 한동훈 장관은 '말 바꾸기'를 한 셈이다.

<7월 26일 법사위 회의록>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돈봉투 사건 그 이후에 대검과 법무부에 합동감찰을 지시하셨고 거기서 아주 탈탈 터듯이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료를 구비하지 않았다. 그 전까지는 뭐냐 하면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게 되는 게 오히려 원칙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5년 보관하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지침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잘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니까 그 이전에 자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때 그런 상황을 다 파악하고도 아무 조치도 안 한 사람이 직무유기지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상황까지 인정하고 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서로 마무리한 것 아닙니까, 지난 정부의 담당자들이. 그렇다면 그 전의 것을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너무 재탕 삼탕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2017년 9월 이전의 특활비 지침에 따라서 그 자료가 지금 현재는 보관이 되어 있지 않은데……

<8월 21일 법사위 회의록>

54 제409회-법제사법제1차(2023년8월21일)

되고 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예.

○최강욱 위원 일단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증빙자료가 다 없어져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그때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2개월이 지나면 폐기하는 지침 같은 게 있었던 것, 그런 거와 상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지침이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강욱 위원 또 월별이에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속기록에 지침이라고 했고 2개월이라고 했는데……

○법무부장관 한동훈 예, 두 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 자료였다고 합니다.

○최강우 위원 이게 중요하 무제니까 자 화이해

또한 이번에 뉴스타파와 5개 지역언론(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이 전국 56개 고검, 지검, 지청의 특수활동비 서류를 확인한 결과, 14개 검찰청에서는 2017년 1월~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가 전부 또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들 검찰청들은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현실과는 들어맞지 않는 해명인 것이다.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교육'과 '교육자료'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그런 교육이 실제로 있었다면, 정말 큰 문제이다. 어떻게 법집행을 맡고 있는 검찰조직에서 범죄를 저지르라는 교육을 하고 교육자료까지 만들었다는 것인가?

자료 불법폐기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을 하고, 교육자료에 넣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이다.

'절도를 저질러도 된다'고 교육을 했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록물 불법폐기도 마찬가지다. 설사 그런 교육이 있었고, 교육에 따라 자료를 폐기했다고 해도 그건 범죄행위일 수밖에 없다. 참고로 기록물 불법폐기는 절도죄(6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높은 범죄이다.

더구나 만약 진짜 그런 교육이나 교육자료가 있었다면, 검찰 조직 내부에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라는 교육'이 이뤄진 것이다. 당연히 언제, 누구의 지시로 그런 내용의 교육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검찰은 행정소송과정에서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그리고 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정보를 은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자료불법폐기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누가 수사를 하느냐이다. 검찰 핵심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행위이다. 여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맡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공수처는 지금 수사인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으므로, 이 수사를 책임지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국회가 나서야 하고, 야당들이 나서야 한다.

국민세금을 엉터리로 써놓고, 조직적으로 자료를 불법폐기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법원에 허위공문서를 작성·제출하고, 법원판결문까지 무시하고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

이것이 검찰 발 '국기문란' 게이트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증언 3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가로막는 비밀주의 관행

대통령실 정보비공개 문제

참여연대 최재혁

1. 취지

- 대통령실은 소속 공직자의 명단, 대통령실의 각 기능이 작동하는 근거규정, 행정의 결과 등에 대해 비공개함. 시민의 알권리, 투명한 국정운영, 시민의 참여 등 정보공개의 취지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서도 비공개의 정도가 과도함.
- 비공개의 사유 또한 적절하지 않음. 정보의 성격, 비공개취소소송의 결과,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 등에 비추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법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등을 내세우며 비공개하고 있음.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사유를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함. 이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실은 현재 활용 중인 문건조차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함. 정보의 성격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거나 또는 지정을 위한 절차를 거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을 운운하는 태도는 상식적이지 않음.
-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라 작성·공개되는 정보목록(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또한 부실함. 대통령실에 다양한 부서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인사팀 등 일부 부서의 자료가 정보목록에서 확인되며 정보목록 상 정보는 사실상 100%에 가깝게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음.
- 2023년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에 정보공개청구한 사례, 관련하여 비공개가 결정된 사례 등을 정보의 성격, 정보비공개의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정보공개, 운영 상 불투명성 일반은 논외로 하고 참여연대의 최근 정보공개청구와 그에 대한 비공개 등의 사례에 대해서 서술함.

2. 구체적 사례

1) 대통령실 직원명단

-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는 다른 공공기관, 해외 등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됨. 홈페이지 등에 상시적으로 공개되어 있어야 할 자료임.
- 대통령실은 소속 공직자의 명단은 개인정보이다 등을 주장하며 법률을 왜곡함.

A. 개요, 비공개사유 등

- 뉴스타파(소송당사자: 홍주환 기자)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대통령실 직원명단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22.10.5.) 사실상 승소함(23.8.17.). 서울

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중 '정보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도록 판결함. 2023년 9월 6일, 대통령실은 항소함.

- 22.08. 뉴스타파의 흥주환 기자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이름 · 소속 부서 · 직위 · 직급 · 소관 세부업무'와 '대통령실의 세부 조직도'를 정보공개청구함.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소속 공직자의 명단(이하 '대통령실의 직원명단') 등이 정보 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 공개를 결정함(아래 <표1> 참고).

<표1> 대통령실 직원명단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제시한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사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생략>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생략>

B. 비공개결정의 문제점 등

- 대통령실이 제시한 비공개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아래와 같음.
- 우선,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직원명단이 공개될 경우, 인사권자의 재량을 침해받는다거나, 로비 · 위협 등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공개에 따라 인사권자의 재량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이거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적인 이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함. 또한, 로비 등의 가능성에 대해, 개인의 양심, 또는 인사, 감찰 등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할 제도로 해소할 일이지 대통령실 직원명단의 공개 여부로 대응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함.
- 둘째,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한 자료가 직원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개인정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 직원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때, 단서 (다)목이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임.

- 셋째,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직원명단은 비공개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함. 이와 같은 주장은 정보공개청구 당시에는 없던 주장이고 재판 중 제기된 주장인데 재판부는 애초에 주장된 비공개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직원명단이 비공개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은 판단에 포함시키지 않음. 한편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된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었다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함.

2) 김건희여사 관련 김의겸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 관련 정보공개 청구

- 대통령실 내부에서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움.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의 권한 오남용, 대통령실 행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 판단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함.
-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보면, 소속 공직자의 명단 뿐만 아니라, 특정 업무의 담당자에 대한 정보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라고 볼 수 있음.

A. 개요, 비공개사유 등

- 2023년 1월,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의겸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안과 관련하여, 누가 고발을 결정하고, 어떠한 근거로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가 해당 고발과 관련 업무를 진행했는지 밝히고자, 고발인과 고발인의 법률대리인의 이름과 직위 등을 대통령실에 정보공개청구함.
-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중 ‘질의’가 포함되어 있다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가 아니라, ‘진정.질의’으로 처리함. 대통령실의 답변을 살펴보면, 대통령실은 ▲고발인 직위 및 성명 :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업무담당자는 법률비서관 (주진우) 및 담당 행정관이며 ▲공무수행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행정관 성명은 공개하지 않음.
- 한편,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한 “고발인이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업무로서 담당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와 관련하여,

▲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의 국내외 주요 일정에 동행하고, 공식적인 대외 일정을 수행하는 등 역할을 하여왔고, 이러한 대통령의 배우자의 활동 전반을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내 제2부속실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관례적·정치적으로 그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에는 의문의 소지가 없”으며. ▲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정부조직법 제14조,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네거티브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악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 범위에 명백히 포함”된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함.

B. 대응 등

- 대통령실의 소송사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법률적인 자문 또는 고문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 ▲소송사무, 법무운영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내부규정을 정보공개청구함.
-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률자문을 받은 바 없으며 별도의 지침 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소송사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함.
- 소송현황과 관련해서는 답변 당시(23.03.06.), 진행 중인 민·형사소송은 없다고 답변함. 다만,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장경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대(전 국회의원) 외 1, 김의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변인),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외 4에 대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이 진행되었다고 밝힘.

C. 유사사례 등

- 참여연대는 23.08.18. 2023년 3.1절기념사, 2023년 815경축사와 관련하여 ▲초안을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과 직위, ▲초안을 결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 ▲점검 또는 수정하기 위한 회의가 있었다면, 개최한 모든 회의 각각에 대해, 회의참석자의 이름과 직위, 해당 회의를 주재한 이의 이름과 직위를 정보공개청구함.
- 대통령실은 부분공개를 결정함.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대통령 행사에 관한 연설문 및 메시지 등 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제2호, 제5호,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비공개함(아래 <표2> 참고). 대통령실은 정보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하기 보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근거를 단순반복하고 있음.

<표2> 기념사 등의 초안작성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비공개사유 등

공개내용	<p>안녕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입니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 아래 -</p> <p>○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대통령 행사에 관한 연설문 및 메시지 등 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p>
공개자료	
비공개 근거조항	국방 등 국익침해
비공개내용	<p>○ 그 외의 기념사를 점검 또는 수정하기 위한 회의 등 기타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다음 각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제2호)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보장·국방·동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직원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p> <p>- (제5호) 연설문 등 작성은 대통령비서실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야 하기에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정보 등 공개는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 (제6호) 대통령비서실 직원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p>

3) 대통령실 운영규정

- 정보의 일부 내용을 스스로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포함한 원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하여 원문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함.
- 행정의 결과도 아니고 운영에 대한 규정에 불과함. 행정의 기준 등을 명시한 규정이 공개된다고 하여 대통령실의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음.
- 운영의 결과 또한 '당연히 비공개'되어야 할 정보는 아님.

A. 개요, 비공개사유 등

- 23.03.03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을 정보공개청구하고, 운영규정의 원문과 함께 별표 등 위 규정에 부속자료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요청함. 운영규정의 존재는 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위 1번 참고)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 중 확인됨. 해당 답변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행정·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과 관련된 고소·고발장 작성 및 제출의 권한이 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별표)"이라고 명시함(아래 <표3> 참고).
- 대통령실은 운영규정의 일부 내용을 스스로 공개함. 따라서 공개가능한 정보라고 판단됨.

<표3>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의 답변 중 운영규정 관련 내용

특히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행정·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과 관련된 고소·고발장 작성 및 제출의 권한이 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별표)

B. 문제점 등

-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함.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내부 규정은 보안 사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함.
- 그러나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의 답변 중 운영규정 중 일부를 스스로 공개함(위 <표3> 참고). 해당 내용에 미루어, 운영규정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조직 또는 직위의 업무분장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추정됨. 운영규정 전체를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하기 어려움.
- 정보의 일부 내용을 스스로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포함한 원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하여 원문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 봉쇄함. 정보공개법에 따라 원문에 공개가능한 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면,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선별적인 공개도 가능함(법 제14조). 그러나 원천봉쇄를 선택함. 정보의 공개라는 원칙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없음.

4) 대통령실 감찰규정

- 운영규정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정보는 행정의 결과가 아니라 행정의 기준, 행정을 규율하는 규정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성격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대통령실의 기능이 저하되고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은 상식적이지 않음.
- 그러나 대통령실의 기능으로서 감찰의 근거규정을 비공개한 결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사실상 동일한 정보가 소송 등에 의해 공개하도록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결정한 상황에 있음.

A. 개요, 비공개사유 등

- 23.01.31.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이하 감찰규정) 등을 정보공개청구함(아래 <표4> 참고).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취임 초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며 공직감찰반을 폐지 했다가,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자 감찰 조사팀’을 다시 설치했다고 알려졌

고 당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에 있었음. 이에, 관련한 근거규정을 확인하고자 했음.

- 참여연대는 2021년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소송 등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로부터 공개 받은 바 있음.
- 대통령실은 “법령상 비밀·비공개”라며 공개를 거부함.

<표4> 감찰규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

-
1.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법, 시행령, 행정규칙, 훈령, 고시, 규정 등 모든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포함)
 2.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폐기 또는 유지, 변경, 개정 되었는지 여부
 3.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
 4. 2021년 공개된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B. 문제점 등

- 소송 등에 의해 이미 공개된 정보와 사실상 동일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대통령실은 비공개결정에서 재판결과에 대한 언급은 확인하기 어려움(아래 <표5> 참고).
-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내용에 “참여연대는 2021년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소송 등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부터 공개 받은 바 있음”이라고 명시했으나 대통령실의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에는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움.
- 한편, 대통령실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가지정 예정 및 지정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에 근거하여 비공개한다고 답변함(아래 <표5> 참고)

〈표5〉 감찰규정 관련 비공개사유

-
- 비공개 내용 : 대통령실의 감찰 근거 규정 및 법령 등
 - 비공개 사유
 - 대통령실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장을 지휘·감독하며, 엄정한 법집행과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비서실 내부규정 등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가지정 예정 및 지정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다른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대통령비서실의 업무 특성상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연대는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했고 기각당함.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참여연대가 제시한 재판의 결과에 대해 “이전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근거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에 대한 공개·비공개 판단은 각 정보의 특성,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마다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건 이의신청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힘(아래 〈표6〉 참고).
 - 또한, 대통령실은 “현재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함(아래 〈표6〉 참고).

〈표6〉 감찰규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비공개사유

-
- 비공개 내용 : 방통위 감찰 근거 규정 및 법령 등
 - 비공개 사유
 - 대통령기록물법(제17조) 및 '23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물관리지침 등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취급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바, 현재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됨
 - 또한 본 건 정보는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대상·감찰 방법 등을 규정한 정보로 (1) 공직자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2) 비위행위 감찰은 인사관리 업무 중에서도 그 업무의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특수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이의신청인은 이전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근거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에 대한 공개·비공개 판단은 각 정보의 특성,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마다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건 이의신청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5) 생수구매대금과 정보목록

- 대통령실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과 공개, 비공개정보에 대한 구분 또한 불성실함.

- 정보목록 역시 과도한 비밀주의, 상식밖의 비공개결정 등으로 판단됨.

A. 개요, 비공개사유 등

-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홈페이지 상 정보자료실의 게시물(24번. 2023.03.31. 작성)인 대통령실 정보목록('23.2월) 중 “2월 생수 대금 지급 요청”(등록일 2023-02-28 부서 명 총무행정팀)을 정보공개청구”함.
-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목록이 부실하고 공개된 자료 역시 사실상 전체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음.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과의 비교, 자료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정보목록의 부실함, 비공개분류의 과도함에 대해 판단해보고자 함.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정보목록 상 비공개로 구분되어 있으나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원문공개하기도 하는 정보인 ‘생수구입대금’을 정보공개청구함.
- 대통령실은 “2월 생수 대금 지급 요청”에 대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하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 납품업체의 경영상 비밀 등을 근거로 제시함(아래 <표7> 참고). 다만, 이후 비공개결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일부내용에 한해서 공개함.

<표7> 생수대금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대통령실의 비공개사유

-
- '23.2월 정보목록 확인결과,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료는 '비공개'로 생산된 자료이며, 정보목록 공표 시에도 '비공개'로 공표한 자료입니다.
 -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료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을 수행하는 비서실의 업무 특성 상 해당 정보 공개 시 직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대통령비서실 납품 업체 정보(업체명, 납품단가, 등록번호, 대표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납품 대장 등)는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참여연대는 이의신청하면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를 요구함.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대통령실의 답변에 따라 1) 최초 청구한 문건 상 생수를 결제한 부서, 결제방법(법인카드 등), 예산과목의 공개 2) 최초 청구한 문건 중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의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3) 납품한 상품과 관련하여 상품명, 상품규격(예를 들어, 용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과 세액, 공급가액과 세액 등을 합친 합계금액의 공개 4) 납품업체와 관련하여 상호, 종목, 대표자 명의 공개 5) 다만, 납품업체의 등록번호, 업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은 공개에서 제외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함.
 - 그러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대통령비서실 직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직원정보” 등 최초 비공개결정과 유사한 입장을 반복함. 대통령실은 2월 생수 대금 지급 요청 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함(아래 <표8>, <그림1> 참고).

〈표8〉 이의신청에 대해 생수구입 관련 비공개결정

공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녕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입니다. ○ 귀하께서 이의신청하신 '2월 생수 대금 지급 요청' 문서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 귀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내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내용 : 공개내용 외 ○ 비공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직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원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호, 대표자명 등 납품업체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 기타 이의신청인이 최초 청구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결제방법(법인카드 등), 예산과목 등)에 대한 공개요구는 각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B. 문제점 등

- 생수를 구매한 거래명세표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을 수행하는 비서실의 업무 특성 상 해당 정보공개 시 직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대통령실의 판단은 상식적이지 않음(위 <표7> 참고).
 - 실제로 공개받은 공문과 거래명세표 등(아래 <그림1> 참고)에는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만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움. 공문 아래 담당자의 이름 등을 명시하는 항목이 존재하기는 하나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의 공개를 비공개할만한 근거인지는 의문임.

〈그림1〉 공개된 거래명세표 등

3. 마치며

- 참여연대는 주로, 대통령실 행정과 관련한 규정, 정책판단의 기준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옴. 대통령실이 보여주는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거나, 권한의 오남용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함.
- 그러나 대통령실은 직원명단, 업무분장 등도 소수의 고위직에 한정하여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례와 비교하여, 또는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사실상 무용한 수준에 이룸. 행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즉, 대통령실 내부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조차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
 - 이와 같은 불투명한 정책결정 또는 행정은 윤석열정부의 (사실상)최초 결정인 대통령실 이전에서부터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불투명성은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예산, 수의계약 등 공개를 통해 활용의 적절성이 판단되어야 할 수많은 요소가 존재하나 이번 논의에서 논외로 함.
- 대통령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근거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음. 직원명단, 업무담당자, 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내부규정 등 대통령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기초적인 정보가 비공개되고 있음. 개인정보 등과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어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운영의 심각성이 배가되고 있음.
-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상 비공개사유를 바탕으로 비공개를 판단하기를 넘어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논리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무력화함.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예정 등과 같은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정보공개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에 지정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거나, 지정된 바 없다고 해석해도 무방한 상황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으니 비공개한다는 류의 주장 을 반복하고 있음.
- 정보공개법 제9조 상 비공개사유에 의한 비공개결정이라고 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비공개결정 사례를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정보공개청구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 상 비공개사유를 적용하기보다 서로 다른 정보에 대해서도 다분히 기계적으로, 혹은 그저 관행적으로 유사한 비공개사유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됨.
-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통령실의 비공개결정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는 아닌지 우려됨. 법률의 자의적인 해석을 넘어, 적용할 수 없는 근거를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알 권리 등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담보하는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참고1> 대통령실 대상 주요 정보공개청구의 현황(2023.01.01 이후, 2023.10.1. 현재)

* 아래 표에서 1번 항목 제외하고 모두 2023년 진행된 정보공개청구임.

	정보공개청구 주요 내용	결정 내용 등	공개내용 또는 비공개 사유 등	청구	통지	이의 신청 등
1	대통령실 직원명단	비공개	비공개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22. 08.11.	22. 08.29.	- 소송 - 승소
2	김건희여사 명예훼손 관련 고발인의 이름과 직위 등	정보공개 청구외(진정·질의)	- 고발인 직위 및 성명 :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 업무담당자는 법률비서관(주진우) 및 담당 행정관	01.30.	02.24.	
3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 등	비공개	비공개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01.31.	02.13.	- 기각 - 소송
4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부분공개	1. 공개내용 - '대통령비서실이 진행 중인 민.형사소송은 없음. - 답변일 기준(2023.3.3.)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고소 또는 고발한 형사사건은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4건. 피고소인은 장경태, 김종대, 김의겸, 부승찬 등 2. 비공개사유 (1)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비공개정보,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정보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02.06.	03.06.	
5	법률자문 등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 임명한 자의 명단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대통령비서실은 외부 법률 자문 고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	02.06.	03.06.	
6	소송사무, 법무운영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내부규정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에 근거하여 소송사무를 관리함. 별도의 지침 등은 존재하지 않음	02.06	03.06	
7	대통령비서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비공개	비공개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03.03.	03.07	- 기각 - 소송
8	2월 생수 대금 지급 요청	비공개	비공개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04.21	05.04	부분 인용
9	2023년 3.1절기념사, 815경축사의 초안을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과 직위, 이를 점검 또는 수정하기 위한 회의가 있었다면, 개최한 모든 회의 각각에 대해 회의참석자의 이름과 직위, 주재한 이의 이름과 직위 등	부분공개	1. 공개내용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대통령 행사에 관한 연설문 및 메시지 등 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비공개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08.18	08.31	

<참고2> 2023년 2월 대통령실 정보목록

홈페이지: <https://www.president.go.kr/open/infolist/nvrq2DmH>

2023년 2월 대통령실 정보목록

등록일	제목	부서명	공개여부
2023-02-01	인사발령 통지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1	출입증 발급 요청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1	정부인사발령통지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1	직원 경조사비 지급요청(1월분)	총무행정팀	비공개
2023-02-02	전출·입 동의요청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2	대통령 임명장 작성(국새날인) 의뢰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2	소송사무통보	법률비서관실	비공개
2023-02-03	공무원 임용제청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3	인사발령 통지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3	인사발령 통지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3	출입증 발급 요청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3	출입증 발급 요청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3	'23년 1월 3~4주차 당직비 지급 요청	총무행정팀	비공개
2023-02-06	정부인사발령통지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6	정보공개 처리(결정통지)	국정메시지비서관실	비공개
2023-02-07	출입증 발급 요청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7	공무원 임용제청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7	인사발령 통지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7	총무비서관실 생수대금 지급요청(1월분)	총무행정팀	비공개
2023-02-07	소모품 구매	총무행정팀	비공개
2023-02-07	1월 생수대금 지급 요청	미래정책비서관실	비공개
2023-02-07	정보공개 처리(결정통지)	국정메시지비서관실	비공개
2023-02-08	1월 생수대금 지급 요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비공개
2023-02-09	인사발령 통지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9	인사발령 통지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9	인사발령 통지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09	출입증 발급 요청	총무인사팀	비공개
2023-02-10	일반수용비카드 이용내역 통보	총무행정팀	비공개
2023-02-10	1월 생수대금 지급 요청	인사기획관실	비공개

증언 4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가로막는 비밀주의 관행

재정정보의 비공개 문제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1. 시작하며

국가가 사용하는 재정을 결정하는 단계는 크게 3단계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단계는 기획재정부가 3월 말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5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정부의 정책실현과 국민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예산이 편성되고 결정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각 부처와 행정기관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어떤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분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산의 편성 단계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5월 말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내년도 수입에 대한 추계와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모아지는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8월 31일까지 정리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국회의 뜻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이 세 단계 중 국민에게 자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모두 예산요구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여전히 공개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생산하는 많은 문서 중에 공개의무가 없는 문서는 없다. 예산요구서도 예외는 아니다.

2. 기존 예산요구서 공개 판례

예산요구서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재판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판례가 이미 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1) 2005년 아산시 실과별 예산요구서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가 원고로 참여한 2006년도 아산시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결과, 비공개결정에 대해 취소 판결이 나왔다.

예산요구서라는 문서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해주는 판결이다.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성,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예산요구서라는 문서의 성격이 예산안의 편성 전단계로서 검토의 단계를 거치고는 있으나 이를 비공개하는 것이 주민의 알권리를 뛰어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또한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재정의 편성에서부터 시작되는 운영의 과정이 투명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대전지방법원 2006. 3. 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2) 법무부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에 따른 예산요구서 공개 사례

2009년 발간된 법무부의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위의 대전지방법원 사례를 바탕으로 예산요구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해당 사례에서 보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에 대한 입증이 핵심인데, 이에 대해 단순히 '각 실과의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 경색, 주민의 사업편성 착오, 예산편성에 대한 불신, 각 단체간 형평성 시비, 무절제한 예산 요구 및 첨예한 이익 갈등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비공개의 사유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는 예산요구서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2009. 12)

3. 기획재정부 예산요구서 정보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현재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기획재정부에 5개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2022년 5월 진행했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청구했던 내용은 예산 편성과정에 있었던 2023년도 예산안이 아니라 2021년 국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미 집행이 되고 있던 2022년 예산안의 기초 자료를 청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과거 예산요구서 정보공개에 대해 정부가 얘기하던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또다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끼친다'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V]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9268187

접수일 2022. 05. 02.

청구 내용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중앙정부 5개 부처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의 예산요구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주십시오.	해당부서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V]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V]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납부 금액	① 수수료 0원	② 우송료 0원	③ 수수료 감면액 0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출처 : 뉴스타파, '600조 국가 예산의 보이지 않는 손을 공개하라')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변론기일과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면서 소송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정부의 예산과정 투명성 확보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4. 우리 정부의 예산투명성에 대한 평가

과연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을까.

단순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게 되는 자료의 불투명성 및 비밀주의를 넘어 예산 자체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있다.

2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것으로 미국의 비영리단체 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이 평균 약 120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예산투명성지수'를 조사하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투명성지수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평가의 과정은 한국을 담당한 기관이 평가를 한 후, 이를 예산담당 중앙부처에 확인 및 답변과정을 반복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별 점수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는 2020~2021년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이다.

지난 두 번의 평가에서 한국은 예산투명성 점수가 상향되었다. 상향의 주요 이유는 투명성이라기보다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국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가 원인이었다.

우리나라의 예산 투명성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정책 및 제도의 내용은 더 많은 재정 정보 및 통계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재정추계의 데이터는 무엇을 사용했는지도 함께 공개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개되는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재정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의 확대 및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의 공개가 우리 정부의 예산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한다.

5. 나가며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모두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었다. 물론 통과 여부는 누구도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정보는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등 관리하는 부처와 보여주는 사이트가 달라 재정 정보의 공개 및 관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정당에 상관없이 관련 법안들을 제정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쉽게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재정의 주요 부처와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청구에 앞선 각 부처가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더 많은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과거부터 재정과 관련된 정보는 더욱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어렵게 찾은 정보를 해석하는데 공을 들여야 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머물고 더욱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처럼 취급받게 된다.

또한, 2022년 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역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보내는 예산요구서를 소관상임위에도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국회의 의견도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됨과 동시에 공개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안 역시 21대 국회가 약 7개월 가량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증언 5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가로막는 비밀주의 관행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정보
비공개 문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들어가면 음식점이나 식품유통업체 등의 행정처분 내역을 검색할 수 있다. 반찬을 재사용했거나,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식당,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업체, 심지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를 받은 음식점의 업체명, 인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이름과 어떤 법을 위반하여 무슨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까지 주르륵 뜬다.

지방자치단체의 새울 전자민원창구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정보를 공표하고 있다.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목욕탕, 허위과장광고를 낸 대부업체, 심야 시간에 청소년이 출입한 노래방이나 PC방까지 모두 공개한다. 역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위반 내용과 행정처분 내역 등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우리 동네 식당, 목욕탕, PC방 등이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이유는 행정절차법에서 법령 상 의무를 위반한자의 성명, 법인명, 위반사실, 처분사실 등을 개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당(식품위생법)이나 목욕탕(공중위생관리법)의 경우 각각의 법에 공표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만, PC방(게임산업법)이나 노래방(음악산업법)의 경우에는 따로 위반사실 공표를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의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과 생활 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들은 사전적으로 알려야 할 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만든 [2021 정보공개 운영안내서] 역시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가 받은 행정처분 통지서는 국민의 생활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해당 업체가 무슨 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알려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에게는 공표라는 제재 절차를 통해 앞으로 의무 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보통 정보공개제도를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적 주권자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으로서, 소비자로서 시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생활에 있어서 피해를 막기 위해 알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반찬을 재활용한 식당부터 심야 시간에 청소년 손님을 받은 PC방까지 다양한 의무 위반과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가 공개 되지만, 정작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다치거나, 죽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우리 동네 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몇 번이나 걸렸는지, 그로 인해 영업정지를 얼마나 당했는지, 사장님 이름이 무엇인지 누구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세상인데, 대기업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위반이 몇번이나 일어났는지,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지난 5년 간 산업재해로 몇 명이나 다쳤고 몇 명이 사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건 쉽지 않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식당 이름을 알리는 것 만큼이나, 산업재해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사업장의 이름을 공개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언제, 어디서, 왜, 누구의 책임으로 산업재해가 일어났고,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등의 정보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할 정보로 보이지만, 실제로 법과 제도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이상한 일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2.

1)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도가 지닌 문제점(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일단 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정보가 아예 공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좁다는 것이 문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공표대상 사업장을 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다시 말해서 연간 2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같은 업종의 비슷한 규모 사업장에 비해 사망재해자가 많거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일어나거나, 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거나 아예 은폐한 사업

장이 공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1명인 사업장이나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공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공표하는 정보의 항목 역시 턱없이 부실하다. 연간 2명 이상 사망재해자가 나온 경우에는 지역과 업종, 사업장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사망자 수를 공개하고, 사망만인율이 높은 경우 여기에 근로자 수, 사망만인율,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을 더해 공개한다. 산재 은폐 사업장은 지역과 업종명, 규모와 사업장명, 소재지, 산재 은폐 적발건수를 공개하며, 보고 의무 위반 사업장은 사업장명과 소재지, 미보고 적발 건수를 공개한다. 어떤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일어났는지, 이로 인한 행정처분과 처벌 내용 등은 어떠한지 등의 정보는 빠져 있다.

심지어 공표하는 시점도 매우 늦다.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이후에야 공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 김용균씨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일하다가 2018년 12월 10일에 사망사고를 당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이 이 사고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된 날짜는 3년이나 지난 2021년 12월 29일이었다. 사고로 인한 이슈가 모두 지나간 후에야 뒷북 공표가 되는 셈이다.

2)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제도의 개선점과 한계(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다행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도로 공표 조항을 두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했다. 또 중대산업재해의 정의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유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으로 확대된 만큼 사망재해에 한정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표제도의 한계를 많이 뛰어 넘었다. 공표하는 항목 역시 사업장의 명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원인, 법 위반 사항,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으로 확대 되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확정된 이후에만 공개한다는 점, 따라서 공표 시점이 한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문제는 동일하다. 지난 9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확정된 1호 사업장(온유파트너스)에 대한 공표가 이뤄졌는데, 사고 발생 시점이 2022년 5월 14일이었으니 공표까지 1년 4개월이 걸린 셈이다.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비교적 빠르게 공표가 이뤄졌음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공표에 2~3년씩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홈페이지의 사전정보 공표목록 메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기 힘든 공고란에 게시한 것 역시 문제다. 앞서 말했듯 정보공개법 시행령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과 생활 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들은 사전적으로 알려야 할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정보들은 보통 공공기관의 사전정보 공표 메뉴를 통해 공개한다. 그러한 편이 시민들이 보다 찾아보기 쉽고, 정보를 누적하여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공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를 사전정보 공표목록 메뉴를 통해 공개해 왔다. 그런 점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역시 공고란이 아니라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1) 산업재해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고용노동관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가 부실한 것에 더해, 산업재해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유독 비공개가 잦은 문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로, 모든 정보는 일단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을 여덟개 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제3호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공개가 원칙이지만,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단어들은 제7호에서 다시 등장한다. 제7호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다시 단서조항을 달아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의 경우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7호에서는 아무리 기업의 영업 비밀에 대한 정보일지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 것이다. “제외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외한다”라는 강행규정임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애초에 공개 대상이기에 아무리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비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정보공개법이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를 중요한 법익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원 판례들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항생제 사용 등급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서울행법2005구합16833] 판결문을 살펴보면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특별감독 보고서에 대해 노동자와 지역주민, 활동가들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한 [서울고법2017누41988] 판결에서도 역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 안전보건관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정보는 소속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내지 건강과 관련된 정보이기에 공개 대상임을 규정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생명과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정보들 역시 폭넓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앞서 살펴보았듯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관련한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의 주요한 법익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고려하여 정보공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산업재해에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없이 무작정 비공개 처분을 내리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2) 4호 비공개(수사 및 재판 관련 정보)의 사례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은 지난 17년 동안 국회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기업의 산재 사고 사망 현황의 자료를 수집하고,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올 해부터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고 기업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했다. 정보공개센터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중요한 것은 비공개 사유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기업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은 수사 대상이 되고, 수사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 법(제4호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한 정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게 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 이후에나 수사대상을 공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호 비공개는 본래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하지만 기업의 산재 사고 사망현황,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등의 정보가 과연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인가? 해당 자료는 어느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몇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모은 것에 불과하며,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공개 되는 정보들에 불과하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신뢰도 높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요 비공개 대상정보 가이드라인’이라는 별표 문서를 통해 근로감독 업무 수사자료가 설령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또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정보의 경우 관련 법률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공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 기업 등의 명단은 기본적으로 4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닐 뿐더러, 설령 그렇다할지라도 중대재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법 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 역시 부적절하다. 피의사실공표죄 자체가 사실 상 한 건의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문화된 조항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의사실공표죄는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기 위한 조항인데 앞서 말했듯 청구한 정보의 내용은 어느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몇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미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사고에 대해서 부분공개를 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러한 과정 없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3) 7호 비공개(영업비밀)의 사례

2021년, 정보공개센터는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되어 행정조치를 받은 사업장의 명단과 산안법 위반 내용, 시정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비공개했다. 4호(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와 7호(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역시 2021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정부의 산재 은폐 예방활동 점검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거제 지역 조선소들의 산재신청 승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청구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승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은폐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의 청구였다. 해당 자료는 그동안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오던 자료였으나, 공단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그 사유는 역시 7호 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법인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이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는 오히려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는 7호 비공개 사유의 제외조항에 해당하는 정보다.

따라서 해당 정보에 대해서 7호는 비공개가 아니라, 오히려 공개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막상 통지서를 살펴보면 7호의 이 단서조항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견서를 살펴봐도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사업장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공개 의견만 존재할 뿐이다. 일선의 고용노동관서들이 생명안전

관련 정보에 대해서 특히 그 법익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기계적인 비공개 처분을 내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4.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는 13만 명에 달 한다. 산업재해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주요한 보건 위험으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의 경우 사업장보건안전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기소 단계에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 역시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사고 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DB로 공개한다. 사고가 일어난지 2~3년 후에야, 그것도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천지차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서 무슨 법을 위반하여,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지 사고의 내용과 처벌의 내용을 알리는 것이 반면교사로 작용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책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된다.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지, 몇 명이나 다치고 죽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야 말로 사고 예방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안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1. 정보공개를 대하는 서로 다른 인식

올해로 정보공개법 시행 25년이 되었다. 지방자치가 처음으로 시작된 1991년 청주시 조례로 시작된 정보공개제도는 1996년에 법이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와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 권리의 담은 정보공개법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법의 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알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판례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21조)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10조)를 지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를 위한 전제로 인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보공개와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하는 현실을 고려해 2018년 개헌안에는 정보기본권을 담은 내용이 포함²⁾되기도 했다.

1) 정보공개 확대와 정보공개청구 오남용

그동안 정보공개법은 몇 차례 개정이 되었다.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지와 활용 역시 늘었다.

일단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2006년 이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 진 것이 주요한 계기다. 2017년부터는 정보공개청구가 급격히 늘어나 2018년부터는 연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가 발생하고 있다.

법 정부적으로 정보공개 정책이 추진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정부3.0정책이 추진되며 정보원문공개 등이 실시되기도 했고, 2019년 한국정부는 열린정부와 참여민주주의와 관련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전 세계의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다자간으로 협력하는 열린정부파트너쉽(OGP)의 의장국으로

2) 2018년 대통령 헌법 개정안 중 정보기본권 내용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선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새로운 양상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

행정에서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이 문제라고 한다. 일부의 시민이 너무 많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이것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알권리를 제약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의 38%에 해당하는 695,387건이 단 73명에게서 이뤄졌다. 1인평균 9,526건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단순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와 기관 괴롭히기 식의 정보공개청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2) 높은 공개율과 자의적 비공개 남발

정보공개문화의 확산과, 공공기관의 공개의 의무가 강조되고는 있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실효성과 효능감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 전부 공개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³⁾ 정보공개에 대한 기관 간의 격차도 크다. 지자체나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중앙행정기관의 공개율은 한참 떨어진다.⁴⁾

반면 시민들은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정보공개처리를 문제로 꼽는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수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 만족도를 조사하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응답은 2019년 세계일보 보도를 참고할 만 하다. 2019년 세계일보

3) 연도별 정보공개처리 현황 (%) / 202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행정안전부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부공개	85	85	83	82	80	78	75
부분공개	11	11	12	13	15	17	20
비공개	4	4	5	5	5	5	5

4) 2022년 기관별 정보공개처리현황 (%) / 202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행정안전부

연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전부공개	66	81	75	82
부분공개	27	15	19	9
비공개	7	4	9	9

가 5회 이상 정보공개청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1%는 정보공개청구를 왜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89%는 근거없는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고 답했다. 청구한 것과 다른 정보를 받았다는 응답(48%)과,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존재 통보를 받았다는 응답(22%)도 있었다. 한 설문자는 “내가 일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바람에 상사와의 면담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도 의미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와 청구인의 권리오남용에 대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전문가 조사를 실시했다. 일반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 경험 여부에 질문하자, 경험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를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넓게 해석하여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가 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정 기한 내에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후 만료일에 공개하는 경우”(48.6),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타당한 이유 없이 청구이유나 청구취지, 활용목적 등을 묻는 경우”(46.0%), “청구한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 결정으로 처리하는 경우”(43.8%)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그 외에 오늘의 토론회에 앞선 발표들을 통해서도 실제 정보공개청구현장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국민대상 사례조사를 통해 나타난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 경험 여부>⁵⁾

단위 : 명(%)

구분	경험	비경험	무응답	전체
1) 정보는 존재하나 전자화된 파일이 없어서,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133 (42.5)	116 (37.1)	64 (20.4)	313 (100.0)
2) 업무량 과다,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공개 거부하거나 부존재 처리하는 경우	117 (37.4)	126 (40.3)	70 (22.4)	313 (100.0)
3)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취하를 종용하는 경우	124 (39.6)	116 (37.1)	73 (23.3)	313 (100.0)
4)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타당한 이유 없이 청구이유나 청구취지, 활용목적 등을 묻는 경우	144 (46.0)	105 (33.5)	64 (20.4)	313 (100.0)
5)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정보를 왜 청구하나며 훈계하는 경우	111 (35.5)	130 (41.5)	72 (23.0)	313 (100.0)
6)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를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넓게 해석하여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	172 (55.0)	80 (25.6)	61 (19.5)	313 (100.0)
7) 법정 기한 내에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 후 만료일에 공개하는 경우	152 (48.6)	98 (31.3)	63 (20.1)	313 (100.0)
8) 청구한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 결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137 (43.8)	108 (34.5)	68 (21.7)	313 (100.0)

공공기관의 자의적 비공개 등으로 인한 문제는 국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공개법안은 모두 5건인데, 이 중 3건이 정보공개청구 시 공공기관이 비공개해 정보공개소송을 거쳐 청구인이 승소판결이 난 사항과 관련이 있다. 재판부에서도 공개로 판단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임의로 비공개를 해 정보획득에 차질을 주거나 재판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알권리에 침해를 주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된 것이다.

<21대 국회 법안 발의 주요 내용> /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췌

의원명 <발의일>	주요내용
김영진 <20220701>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공개결정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려는 국민으로서는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자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보목록에 직접 드러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일부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에 비공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은 정보목록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5)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행태와 청구인의 오남용을 중심으로, 윤광석, 이재완, 2020, 한국행정연구원

의원명 <발의일>	주요내용
김용민 <20221127>	<p>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외교부, 국방부 등의 경우 국방, 통일, 외교 등 안보 관련 이유를 들어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책, 업무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p> <p>이에 대통령실을 포함한 외교부 및 국방부 등 현재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책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를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p>
윤건영 <20220822>	<p>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의 행정복지센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소속 직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탓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과 직무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음.</p> <p>이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p>
백혜련 <20220325>	<p>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며,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3년마다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는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할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비공개 세부 기준 및 이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함</p>
황운하 <20230823>	<p>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p>

2. 정보공개법 개정 현황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관행을 줄이고, 시민의 알권리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의 알권리침해와 직결되는 현행 9조 1항에 해당하는 정보비공개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은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난 25년 동안 2004년에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 그 외에 의미있는 개정은 2013년에 정보원문공개를 규정화한 것과, 2020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확대한 것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개정이 가장 많이 이뤄진 조항은 현행 23조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변경한 것으로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역할에 대한 개정은 없이,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로 소속만 계속 바뀌고 있다.

<정보공개법 주요 개정 현황>⁶⁾

날짜	개정 구분	내용
1996. 12. 31.	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2004. 1. 29.	전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 사전정보공개 도입 및 정보목록의 공개 -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강화 및 비공개시 구체적 이유 명시 의무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 운영사항 국회 보고의무
2006. 10. 4.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공공기관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의무
2008. 2. 29.	일부개정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 (대통령→행정안전부)
2013. 8. 6.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실시 - 공공기관의 범위 명확화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 상향 및 설치 의무기관 확대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해당 과정 종료 시 청구인에게 통지 의무 - 안전행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 개선 권고
2016. 5. 29.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외 서명 허용
2020. 12. 22.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의무 신설 - 사전정보공개 세분화 -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 및 정보공개교육 의무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반복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 상향 및 설치 의무기관 확대 / 심의회 위원 제적 기피사유 신설 / 심의회 미개최 시 문서 통지 의무 -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행정안전부→국무총리)
2023.0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국무총리→행정안전부)

3.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제안 주요 내용

정보공개 시행 25년,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 30년을 맞아 행정과 공직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정보공개센터, 경실련, 참여연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는 <재정넷 :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발제문에서 제안하는 개선안은 제 단체들이 함께 논의한 것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의 개

6)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제 개선방안 연구>, 조민지 미발표 논문

정안을 담았다. 정보공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 및 시스템의 개편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후에 행정현장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1) 공개대상의 확대

① 정보공개 청구권 확대

현행법에 정보공개청구의 권리자는 국민과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알권리는 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적과 거주지 등으로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벌어진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이 소방서를 상대로 구급일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외국인이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기도 하다.⁷⁾

또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하는데,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다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를 비춰볼 때 청구권자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편적 알권리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라 청구권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어져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모든 사람'(toute personne), 미국과 영국의 경우 '누구나'(any person), 일본의 경우 '누구든지' 등으로 이미 정보공개청구에 자격을 두지 않은 사례가 많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사전정보공개 확대

사전정보공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기관의 주요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방향이 수동적 미온적 방향에서 능동적 실질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⁸⁾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참여와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 설치운영되는 각종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결과를 사전정보공개 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운영현황은 의사결정과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요 정보다. 각 사안별 시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협의체로 거버넌스의 현장이기도 하다. 정보공개 청구가 많은 내용이기도 하다. 개별법에 비공개로 정하지 않은 이상 위원명단과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2023

7) “한국정보는 기라리라고만” 차별 받는 이태원 참사 외국인 피해자. 뉴스타파, 2023.05.30.

8) 국민과 국가의 집단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보공개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 2017, 토지공법연구

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했다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야 공개한 바가 있으며, 이미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는 정보공개위원회 회의록의 최근 것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통지 하기도 했다. 정보공개를 총괄하는 주무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현황마저 비공개하는 실정이니 다른 부처의 위원회 현황이 충실히 공개될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 관련 정보와 회의록을 사전정보공개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③ 정보목록의 확대

정보목록의 공개는 정보공개청구의 사실상 전 단계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절차다. 정보목록이 충실히 공개되면 내용과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포괄적 정보공개청구를 줄일 수 있고, 정보 보유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정보부존재 남발을 예방하거나, 정보부존재에 대한 입증을 도울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정보목록을 공문서목록에 대한 것으로 한정했으나, 공문 이외에 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이 늘어나고 데이터에 기반한 업무가 증가하는 만큼, 공문서 외의 정보유형과 관리항목을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2)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분화

정보공개법 9조 1항은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여덟가지 사유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정보공개처리를 하는 담당자들이 이 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적용해 정보공개법의 취지와는 달리 공개여부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실정이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여지 를 두는 모호한 내용도 문제다. 이에 비공개사유를 구체화하고, 예외적 한시적 조치인 비공개 결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했다.

<정보공개법 9조 비공개 조항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일>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조항 나. 다른 법률에서 방청 등 비공개로 정한 회의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보안 업무, 병력·전술, 무기 운용 및 군사훈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신설>	3. 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국과 상호 신뢰하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정보 및 내부 검토 목적의 비공식정보 등 공개될 경우 통일·외교관계를 저해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동일>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증거·증언·변론 등의 실효성을 저해하여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신설>	6. 범죄의 예방, 진행 중인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현행법	개정안
<p>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7.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p>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p> <p>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p> <p>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p> <p>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p> <p>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p> <p>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p>	<p>8.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p> <p>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p> <p>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p> <p>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p> <p>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p> <p>마.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p>
<p>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p> <p>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p>	<p>9.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명백히 침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p>

현행법	개정안
<p>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가.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다. 공공기관의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예산 지출 등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관한 정보</p> <p>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10. <동일></p>
<p>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및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국회활동을 통한 공개나 공익적 목적의 내부고발 또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국민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동일></p>
<p>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동일></p>

3) 불복절차 실효성 확대

① 부존재 이의신청 포함

공공기관의 공개와 비공개 결정통지 이외의 통지비율은 점점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의 51%에 해당하는 953,732건은 정보부존재 및 민원, 취하, 종결, 이송 등으로 처리된 건으로, 2021년대비 5% 증가했다.

2012년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정보부존재에 대한 별도의 통계를 내지 않아 정확한 추산을 할 수는 없지만 행정기관에서 정보부존재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앞서 살펴본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 행태에 대한 응답 중 정보부존재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정보는 존재하나 전자화된 파일이 없어서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42.5%) “업무량과다,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공개거부하거나 부존재 처리하는 경우”(37.4%)가 나타났다.

현행법상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게 되면 정보의 존부에 대한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정보를 받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 불복절차를 거쳐야만 재결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정보부존재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들기도 한다. 소관기관이 아니다보니 정보 존재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이에 실질적으로 정보비공개의 성격을 갖게 되는 정보부존재 통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정보공개심판원 신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정보비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신청은 총 12,513건으로 2021년(10,569건) 대비 18.4%가 증가했다. 이 중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행정심판청구는 3,579건으로 2021년(1,146건) 대비 212.3% 늘어났다.

반면 불복에 대한 인용율은 불복구제신청과 일치하지 않는다. 불복구제 수단 중 인용율이 가장 높은 것은 행정소송(49%)이고, 그 뒤를 이의신청(33%), 행정심판(7%)이 잇는다.

행정심판청구는 소송과 같은 비용의 부담 없이 청구기관의 영향력이 낮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장점이 모든 행정심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한 기관의 기관장 등이 위원장이거나 위원으로 속해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비공개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각 행정청의 다양한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구제하는 역할을 하다보니, 정보공개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기도 하다. 행정심판 인용율이 가장 낮은 반면, 행정소송 인용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가 이를 반증한다.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권리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에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심판기능을 별도로 독립한 정보공개심판원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비공개에 대한 알권리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정보공개위원회 역할 확립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의 조사·분석 및 심의기준 개선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보공개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거나, 제반 조사와 분석, 권고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소속만 바뀌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정되면 안된다.

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보공개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와 징계 등의 역할을 추가해 위원회의 의무와 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다.

5) 벌칙과 징계

앞서 증언대회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고의적 공개거부나, 고의적 업무불이행, 허위답변 등의 행정실태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일선 정보공개청구에서의 자의적 비공개도 문제지만,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한 사항의 정보공개청구가 또다시 비공개되는 것도 큰 문제다.

법에서 공개정보로 특별히 명시되어있거나, 법원의 공개판결이 있어도 고의적으로 비공개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악의적인 공개거부에 대해 처벌 등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2018년에는 정보공개센터와 진선미 의원실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고의적 정보공개 불이행 및 알권리침해에 대한 페널티 조항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은 공공기관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인이 승소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민사상 제재규정이 있다. 또한 개별 주정부 역시 금전적인 민사상 제재 및 처벌과 같은 형사상 제재 조항을 마련한 곳들이 있으며, 소송과 별개로 주정부 차원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는 한국의 공공기관에서도 여럿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정보공개지침을 통해 "장관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관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징계규정을 두고 있다. 국세청 역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서 같은 내용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비리사건처리규정에서 비위대상에 거짓정보공개와 정보은닉, 불복절차 관련 정보공개의무 불이행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위 및 과실의 크기에 따라 중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통해 비슷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거짓정보 공개 혹은 공개청구 대상 정보 은폐하거나 불복절차 결과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했을 경우 경중에 따라 파면부터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들 기관 이외에도 기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정을 통해 알권리침해에 대해 자체적 징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한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악의적인 비공개 및 허위답변, 의무불이행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토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윤광석

오늘 발제는 정보공개법 개정현황,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과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등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다양하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높고, 제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해왔고,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사전정보공표제도와 원문공개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의 소극적 행태와 청구인의 오남용입니다.

제가 지난 2019년에 이러한 두 가지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정보공개제도를 연구를 해보니, 두 가지 문제 모두 실제로 존재하고, 정보공개제도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문을 살펴보니, 이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주로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 행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에 대해서 토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은 경쟁하는 두 개 이상의 이익 가운데 균형점을 찾고,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각종 조치나 대안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도 간략히 언급하셨듯이 약 73명의 일부 청구인이 1인당 평균 9526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23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의 통계를 인용하여 지적하신 ‘전부공개의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전부공개를 하지 않는 내용이나 사유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부 삭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비공개의 근거가 미흡한 사례, 청구한 것과 다른 정보를 받은 사례, 있는 정보라고 믿고 있는데 부존재 통지를 받은 사례, 기간 연장후 만료일에 공개하는 사례 등은 제가 2019년에 연구할 때에도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입니다.

본 발표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 제안에 대해서

는 대체로 그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공개대상의 확대, 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구체화,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 확립 등은 제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전정보공개 확대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살펴보지 않아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정보공개평가위원으로 활동할 때 각 기관의 사전정보공표 현황을 살펴보면 각 기관별로 사전공개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이나 내용, 그 품질 등에서 편차가 심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목록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일반국민들은 알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분화의 경우, 현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명시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비교적 구체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명확하여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는 조항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중대한 이익이나, 현저한 지장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문구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정진임 소장님의 제안하신 개정안 중에서 2번 국가안정보장, 3번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정보는 현재 보다 구체화하거나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소 마이너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법인, 단체, 개인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에만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적이란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불복절차 실효성 확대에서 정보부존재의 경우 이의신청으로도 제기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판원 신설의 경우 행정소송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고, 2021년 기준으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율이 약 7%로 낮다는 점에서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보공개위원회의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효성 있

는 조직이 되려면 현재의 심의·조정 역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집행력이 있는 즉, 팔다리가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벌칙과 징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9년에 정보공개제도를 연구할 때, 해외사례를 살펴보니 벌칙과 징계에 관한 사례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주정부 차원에서는 조지아주, 콜로라도주 등이 정보공개 거부가 정당하지 않으면 민사상 소송비용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상 벌금의 경우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아이오와주 등이 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하여 1,000달러, 2,500달러 등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을 제외하고 해외 다른 국가에서는 민사와 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의 경우 민원에 대한 응대와 처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민원처리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현재 민원처리법은 벌칙조항을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만 벌칙조항을 담는다면 법률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벌칙조항을 담는다면 현재도 기피대상 업무인 정보공개업무에 대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기피가 더욱 심해지는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9년도 연구에서 제안하였듯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78조 징계사유 중 제1항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를 근거로 하여 제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에 정보공개 관련 조항을 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 정도의 제재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원고인 국민이 승소할 경우 그 비용을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형사상 제재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관련 연구의 발주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도입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공기

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는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갑질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할 때, 을질에 대한 대응방안도 항상 같이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은 갑질에 대한 처벌 규정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에 대해 주로 다루었지만, 추후에는 일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행태도 함께 다루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안

**오픈넷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분화에 대한 의견

-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한 각 호에서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한번에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발제문의 개정안으로 제시해주신 대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세분화하는 취지에 동의함
-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가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추가 요건을 따지지 않고 개인정보이기만 하면 우선 비공개하려는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는 문제점 발견되어 제안하신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함
- 또한 제7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 역시 그 자체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당사자인 제3자의 의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업비밀로 그 범위를 보다 분명히 제한한 것과, 예외사유를 확대한 것에 찬성 의견임

불복절차 실효성 확대에 대한 의견

-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의 기간이 매우길어 최종 승소하더라도 실제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에서 정보의 가치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행정소송의 소가가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인지대 및 패소 비용 상승으로 공익소송 지원 없이는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제한되고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게 상승함
- 따라서 행정소송 이전 단계에서 불복절차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것이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주효할 것으로 보이며, 발제문에서 제안해주신 정보공개심판원 신설 역시 전문성을 담보하여 보다 적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 의견임
-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의신청의 내실화, 즉 각급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2020. 12. 법 개정 시행을 통해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위원 비율을 확대한 것이 객관적 내실화 시도였다고 보이나 실질적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의 가이드라인이 정보공개심의회의 판단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온라인을 이용하여 가이드라인의 최신 판례나 최신 재결례 업데이트 기간을 단축하고, 가이드라인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실관계 적시, 사실관계의 범주화, 판단에 이르는 과정의 상세 기술이 요구됨

[참고]

재정넷 제안

정보공개법 개정안

[참고] 재정넷 제안 정보공개법 개정안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p>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동일>
제2조(정의)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동일>
	<p>가. 국가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과 국무총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동일>
	<p>나. 지방자치단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동일>
	<p>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p>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내용 강조	① 공공기관이 생산·접수·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청구, 공표 및 원문 공개의 대상이 된다.
	<신설>		② 공공기관은 생산·접수·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일>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내용 강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보의 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 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정원 관련 정보 구체화	<p>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생산·접수·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 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u>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u> 2. <u>방첩(산업 경제 정보 유출, 해외 연계 경제 질서 교란 및 방위 산업 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 범죄 조직에 관한 정보</u> 3. <u>「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 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u> 4. <u>「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 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 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u> 5. <u>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 조직 등 사이버 안보 및 위성 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u></p>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u>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u>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청구권자 확대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누구든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일>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동일>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일>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동일>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		<동일>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 규칙·대법원규칙·현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6 조의 2(정보 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일>
	<신설>	청구인 압박 금지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라 제출 또는 진술할 의무가 없는 정보공개 청구 목적 및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 용도 등의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정보 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 9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국민생활</u> 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위원회 정보 포함	제 7 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 9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국민의 건강·안전 및 생활</u> 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또는 사업 중 「국가 재정 법」 또는 「지방 재정 법」 상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p>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감사 결과, 연구용역 결과 및 비위 행위를 한 공무원·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과 등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p> <p>4.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 회의 관련 정보. 단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정한 위원회는 제외한다.</p> <p>5.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p>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동일>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p>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목록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정보 목록의 확대	<p>제8조(정보 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목록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제외하거나 편집하여 공개하되, 그 분리 및 편집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p> <p>1. 제목, 생산·접수일, 담당 부서 및 담당자 명, 정보의 공개 구분, 보존 기한, 단위 과제 명 등이 포함된 문서의 목록</p> <p>2. 정보의 보유 및 관리 여부를 알 수 있는 업무 관리 시스템 과 행정 정보 시스템의 종류와 각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정보의 항목 명이 포함된 목록</p>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동일>
제8조의 2(공개 대상 정보의 원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동일>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문공개)	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 9 조 (비 공개 대상 정보)	<p>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p> <p>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신설></p> <p>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p>1호 사유 최소화</p> <p>국가안보 구체화</p> <p>통일외교 구체화</p> <p>재판 관련 구체화</p>	<p><동일></p> <p>1.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p> <p>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직무상 비밀 염수의 무조항</p> <p>나. 다른 법률에서 방청 등 비공개로 정한 회의</p> <p>2. 국가안전보장·국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보안업무·병력·전술·무기 운용 및 군사훈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3. 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국과 상호 신뢰하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정보 및 내부 검토 목적의 비공식 정보 등 공개될 경우 통일·외교관계를 저해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4. <동일></p> <p>5.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증거·증언·변론 등의 실효성을 저해하여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신설>	수사 관련 구체화	6. 범죄의 예방, 진행 중인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할 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사 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 삭제 --> 거버넌스 및 참여 민주주의 강화	7.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u>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u> 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내용 구체화	8.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u>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u> .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p>7.법인·단체또는개인(이하“법인등”이라한다)의<u>경영상·영업상비밀</u>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u>의익</u>을현저히해칠<u>우려가있다고</u>인정되는정보.다만,다음각목에열거한정보는제외한다.</p> <p>가.<u>사업활동</u>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危害)로부터사람의생명·신체또는<u>건강을보호</u>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p> <p>나.위법·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p>	내용 구체화	<p>9.법인·단체또는개인(이하“법인등”이라한다)의「<u>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u>」제2조제2호에따른영업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u>경제적이익</u>을명백히침해할것으로인정되는정보.다만,다음각목에열거한정보는제외한다.</p> <p>가.법인등의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危害)로부터사람의생명·신체또는<u>건강에대한피해</u>를예방하고<u>이를하기위하여</u>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p> <p>나.위법·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p> <p>다.공공기관의물품및서비스의구매계약체결및이에따른예산지출등<u>물품및서비스구매에관한정보</u></p> <p>라.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p>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0. <동일>
	②공공기관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가 <u>기간의경과등으로</u> 인하여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는그정보를공개대상으로하여야한다.	공개원칙 강조	②공공기관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가 <u>기간의경과및업무보고·국정감사등국회활동을통한공개나공익적목적의내부고발또는언론보도등으로</u> 이미국민에게공공연하게알려지게된경우등으로인하여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는그정보를공개대상으로하여야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동일>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p>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p>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p> <p>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p>	개인정보 최소화, 외국인의 경우 받게 될 정보	<p>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p>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p> <p>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p>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동일>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일>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동일>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동일>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보공개 대상 개인에게 비공개의견청취 제한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정보가 제9조 제1항 제8호 마목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개인은 전단에 따른 제3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동일>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정보부존재 삭제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2.공개청구의내용이진정·질의등으로이법에따른정보공개청구로 보기어려운경우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p>①공공기관은제11조에도불구하고제1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정보 공개청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의성격,종전청구와의내용적유사성·관련성,종전청구와동 일한답변을할수밖에없는사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해당청구를 종결처리할수있다.이경우종결처리사실을청구인에게알려야한다.</p> <p>1.정보공개를청구하여정보공개여부에대한결정의통지를받은자가 정당한사유없이해당정보의공개를다시청구하는경우</p> <p>2.정보공개청구가제11조제5항에따라민원으로처리되었으나다시같 은청구를하는경우</p>		<동일>
	<p>②공공기관은제11조에도불구하고제1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정보 공개청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 분에따라안내하고,해당청구를종결처리할수있다.</p> <p>1.제7조제1항에따른정보등공개를목적으로작성되어이미정보통신망등을통하여공개된정보를청구하는경우:해당정보의소재(所在)를 안내</p> <p>2.다른법령이나사회통념상청구인의여건등에비추어수령할수없는 방법으로정보공개청구를하는경우:수령이가능한방법으로청구하도 록안내</p>	사전공개를 종결처리 관행 삭제	<p>②공공기관은제11조에도불구하고제1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정보 공개청구가다른법령이나사회통념상청구인의여건등에비추어수령 할수없는방법으로정보공개청구를하는경우에는수령이가능한방법 으로청구하도록안내하고,해당청구를종결처리할수있다.</p>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		<동일>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동일>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특수기관 삭제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동일>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동일>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일>
제12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 사항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p>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 사항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심의 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심의 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 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② 심의회의 심의 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동일>
	<p>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동일>
	<p>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p>		<동일>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p>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공개방법 강조	<p>제13조(정보공개의 방법 및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인이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출 또는 진술한 공개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p>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p>		<동일>
	<p>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p>		<동일>
	<p>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동일>
제14조(부분 공개)	<p>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p> <p><신설></p>	<p>부분공개 세분화</p>	<p><동일></p> <p>② 제1항에 따라 분리하여야 할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공개하거나 공개의 일시를 청구인과 협의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의 일시와 달리 정할 수 있다.</p>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p>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p> <p>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동일>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p>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통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개방법 강조	<p>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변환하여야 할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환한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공개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p>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cctv 영상편집비용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수수료부과 예방	를 부분공개를 위한 분리 또는 추가적인 변환 없이 열람·시청 또는 청취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동일>
	<신설>	공개정보 미수령 방지	공공기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예상되는 비용의 액수, 산출근거 및 결제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밖에 비용 및 그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존재 이의신청 포함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부분공개 결정·부존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심의회 미개최 오남용 방지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제19조(행정심판)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단순·반복적인 청구로 인하여 심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동일>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동일>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정보공개 행정심판 절차 마련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제>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신설>			<p><u>제 19조의 2(정보공개심판원)①제 19조제 1항에 따른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심판원을 둔다.</u></p> <p><u>②정보공개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u></p> <p><u>③정보공개심판원에 원장과 6인의 정보공개심판관을 두되, 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원장이 외의 정보공개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u></p> <p><u>④원장 및 정보공개심판관은 정보공개·법률·행정·회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u></p> <p><u>⑤원장 및 정보공개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만 종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u></p> <p><u>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u></p> <p><u>2. 장기(長期)의 심신식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u>⑥정보공개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 127조 및 제 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p> <p><u>⑦정보공개심판원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조사 사무를 담당하는 심판 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⑧정보공개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신설>			<p><u>제 19조의 3(청구기간)①심판 청구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 경과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u></p>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p>한다.</p> <p>② <u>이의신청을거친후심판청구를하려면이의신청에대한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호에서정하는날부터90일이내에심판청구를할수있다. 다만, 제18조제3항에따른결정기간내에결정의통지를받지못한경우에는그결정기간이지난날부터90일이내에심판청구를할수있다.</u></p>
<신설>			<p><u>제19조의4(청구절차)①심판청구를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불복의사유등이기재된심판청구서를그처분을한공공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심판청구서를받은공공기관의장은이를지체없이정보공개심판원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u></p> <p><u>②제1항심판청구서를받은공공기관의장은이를받은날부터10일이내에그심판청구서에대한답변서를정보공개심판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u></p> <p><u>③제1항의답변서가제출되면정보공개심판원장은지체없이그부본(副本)을해당심판청구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u></p> <p><u>④정보공개심판원장은제4항본문에따른기한까지공공기관의장이답변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기한을정하여답변서제출을촉구할수있다.</u></p> <p><u>⑤정보공개심판원장은공공기관의장이제4항에따른기한까지답변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증거조사등을통하여심리절차를진행</u></p>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u>하도록할수있다.</u>
<신설>			<p><u>제19조의5(증거서류또는증거물)①심판청구인은심판청구서를제출할때와제19조의4제3항에따라송부받은답변서에대하여항변하기위하여보충서면을제출할수있으며,이때정보공개심판원장에게증거서류나증거물을제출할수있다.</u></p> <p><u>②정보공개심판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면,심판청구인이나피청구인에게증거서류나증거물을기한을정하여제출할것을요구할수있고,그경우심판청구인과피청구인은그기한까지제출하여야한다.</u></p> <p><u>③제1항에따라증거서류가제출되면정보공개심판원장은증거서류의부분을지체없이상대방에게송부하여야한다.</u></p> <p><u>④정보공개심판원장필요하다고인정하면당사자를참여시키지않고제출된공개청구정보를비공개로열람·심사할수있다</u></p>
<신설>			<p><u>제19조의6(정보공개심판관회의)①정보공개심판관회의는원장과심판관들로구성한다.</u></p> <p><u>②정보공개심판관회의는심판관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의(開議)하고,출석심판관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u></p> <p><u>③정보공개심판관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다만,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개할수있다.</u></p> <p><u>⑤정보공개판관회의의운영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u></p>
<신설>			<u>제19조의7(심판관의제척과회피)①심판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판관여로부터제척된다.</u>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p>1. 심판청구인 또는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p> <p>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심판청구 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p> <p>4. 그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p> <p>② 심판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p>
	<신설>		제19조의8(사건의 병합과 분리)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신설>		제19조의9(준용)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정보공개심판관 회의"로 본다.
제20조(행정 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일>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동일>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		<동일>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 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동일>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일>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동일>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 개위원회의 설 치)	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조정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개정 2014.11.19.,2017.7.26.,2020.12.22.,2023.5.16.> 1.정보공개에관한정책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 2.정보공개에관한기준수립에관한사항 3.제12조에따른심의회심의결과의조사·분석및심의기준개선관련 의견제시에관한사항	위원회 역할 확대	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조정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개정 2014.11.19.,2017.7.26.,2020.12.22.,2023.5.16.> 1.정보공개에관한정책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 2.정보공개에관한기준수립에관한사항 3.제12조에따른심의회심의결과의조사·분석및심의기준개선관련 의견제시에관한사항
---------------------------	--	-----------	--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p>4.제24조제2항및제3항에따른공공기관의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및그결과처리에관한사항</p> <p>5.정보공개와관련된불합리한제도、법령및그운영에대한조사및개선권고에관한사항</p> <p>6.그밖에정보공개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p>		<p>4.제24조제2항및제3항에따른공공기관의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및그결과처리에관한사항</p> <p>5.정보공개와관련된불합리한제도、법령및그운영에대한조사및개선권고에관한사항</p> <p>6.정보공개의무위반등에대한조사및징계권고에관한사항</p> <p>7.그밖에정보공개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p>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p>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동일>
	<p>②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이경우위원장은포함한7명은공무원이아닌사람으로위촉하여야한다.</p> <p>1.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차관급공무원이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p> <p>2.정보공개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p> <p>3.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에서추천한사람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p>		<동일>
	<p>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동일>
	<p>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동일>
	<p>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p>		<동일>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로 본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일>
	<신설>	위원회의 실효성 담보	<u>제23조의2(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심의·조정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u>
제24조(제도 총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동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동일>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일>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동일>
	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동일>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동일>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일>
제27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일>
	제28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동일>
제28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동일>
제29조(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동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 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 기간		<동일>

내용	현행	취지	개정안
	2.제18조제1항,제19조제1항및제20조제1항에따른정보공개청구후 경과한기간 3.제18조제3항에따른이의신청결정기간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신설>	벌칙	<p><u>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승인한사람에게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u></p> <p><u>1.정보가존재하는데도정보가부존재한다고허위로통지를하거나조장하는경우</u></p> <p><u>2.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고의로거짓정보를공개거나식별할수없는형태로공개한경우</u></p> <p><u>3.청구된정보가공개대상인것을알면서정보를은닉할목적으로공개를거부한경우</u></p> <p><u>4.불복절차의결과에따라정보공개의무가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공개를실시하지않은경우</u></p>
제31조(정보공개의무위반등에대한징계)	<신설>	징계	<p>공공기관의장은정보공개위원회의요구가있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징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p> <p><u>1.정보공개청구처리에따른절차를고의로지연시킨경우</u></p> <p><u>2.정보공개청구의취소를회유한경우</u></p> <p><u>3.이의신청또는이의신청과관련된심의회의개최를방해한경우</u></p>

